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7. 20 선고 2016가단1184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6. 7. 6.

판결 선고2016. 7. 2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남양주시 D 대 61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ㄱ)부분 62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(ㄱ)부분 62㎡를 인도하고,
나. 피고 C은 위 가.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강완수

별지